

# 감사위원회 규정

2026.03.24

엘에스머트리얼즈(주)

## 제1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엘에스머트리얼즈 주식회사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적용범위)

1. 감사위원회의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가 자회사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 제2장 구 성

### 제 3 조 (구성 및 임기)

1.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2.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사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그 임기가 최종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의 관한 정기 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3. 감사위원회 위원은 연임될 수 있다.
4.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제 4 조 (해임 및 총원)

감사위원의 해임권한은 주주총회에 있으며, 주주총회는 해임, 임기만료 또는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감사위원회의 결원이 생길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총원하여야 한다.

#### **제 5 조 (위원장)**

1.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2.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사회, 주주, 채권자, 규제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위원장의 유고로 인해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장 회 의**

#### **제 6 조 (종류)**

1. 감사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 7 조 (소집권자)**

1.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는 제5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없이 위원회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감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 8 조 (소집절차)**

1. 감사위원회 소집은 회의일자를 정하고 12시간 전에 각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경우 제1항의 절차 없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 9 조 (의사의 진행 및 결의방법)

1.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를 진행하고, 회의의 질서를 유지한다.
2.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3.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감사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감사위원은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6. 감사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반대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 10 조 (부의사항)

감사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감사에 관한 사항
  - 1) 상법 제412조의 2에 의한 이사의 보고에 따른 조치
  -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외부감사인의 통보에 따른 조치
  - 3) 감사록의 작성
  - 4) 자회사의 조사에 관한 사항
  - 5) 전문가의 자문에 관한 사항
3. 외부감사인 선임 및 변경, 해임
4. 감사보고서 작성, 제출 및 제출에서의 의견 진술에 관한 사항
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 사항

6. 내부회계관리제도규정의 제정, 개정, 폐정
7. 기타 법령에 정하거나 정관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장 직무와 권한 및 의무

### 제 11 조 (직무와 권한)

1.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위하여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2.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3.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해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4.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임 및 변경, 해임할 권한을 가진다.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연속하는 매 3개 사업년도의 외부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자를 외부감사인으로 변경선임 또는 선정하거나, 이미 선정된 외부감사인의 감사년도 중 해산 등의 이유로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외부감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경우 다음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전 외부감사인 후보자로부터 외부감사 계획에 대하여 대면 보고를 받는다.
  - 2)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후보자의 독립성과 전문성,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징계여부, 감사에 필요한 인력 등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평가한 후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3)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선임 후에는 선임 결과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사업보고서 공시 등을 통하여 주주 등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외부감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의논할 수 있고, 최소 1년에 1회이상 만나서 감사 계획 등 주요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7. 감사위원회는 매년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당초 외부감사인과 협의한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인력의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이를 문서화한다.
8. 감사위원회는 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한다.
9. 이사는 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이사는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감사위원회는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1. 감사위원회는 이사와 회사간의 소송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하고, 주주의 대표, 소송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 **제 11 조2(내부회계관리제도)**

1.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정기총회 개최 1주 전 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제목이 위원회의 평가보고서임을 기술
- 2) 수신인이 주주 및 이사회임을 기술
- 3) 평가기준일에 평가대상기간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의 효과성에 대하여 평가하였다는 사실
- 4) 경영진이 선택한 내부통제체계와 이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책임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으며 위원회는 관리감독책임이 있다는 사실
- 5)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참고하여 평가하였다는 사실, 추가적인 검토절차를 수행한 경우 해당 사실
- 6)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한 결과 및 시정 의견
- 7)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및 조치 내용
- 8)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및 대안
- 9)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평가 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모범규준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 10)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모범규준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론
- 11)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와 운영상의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설명
- 12)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또는 이미 수행중인 절차
- 13) 보고서 일자
- 14) 감사위원의 서명 날인

15) 기타

- (1) 대표이사의 보고내용 요약(평가 결론, 유의한 미비점, 시정조치 및 향후계획 등)
- (2) 평가 결과 추가적으로 발견된 사항
- (3) 권고사항

**제 12 조 (의무)**

- 1. 감사위원회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 2.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주주총회에서 그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 3.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4.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5. 감사위원회는 이사로부터 제출받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관계법령상의 서류, 연결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감사방법의 개요
  - 2)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관한 사항
  -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에 관한 사항
  - 4) 영업보고서에 관한 사항

**제5장 기 타**

**제 13 조 (내부감사 전담자)**

1. 감사위원회 산하에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내부감사 전담자를 둘 수 있다.
2. 내부 감사 전담자를 둘 경우 재무관련 업무를 3년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3.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 전담자가 독립적으로 내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 14 조 (이사회 보고)**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와 관련된 사항

#### **제 15 조 (전문가의 자문)**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 16 조 (중요회의에의 출석)**

1. 감사위원은 경영방침의 결정 과정, 경영 및 업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임원회의 및 그 밖의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전항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감사위원은 심의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의사록 등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 **제 17 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사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 18 조 (감사위원회 평가)**

1. 감사위원회는 독립성과 활동내용에 대하여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평가를 수행한다.
2. 감사위원회 평가항목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재무보고 감독,

외부감사 감독, 내부통제 등 법규에서 정한 업무와 이사회가 위임한 업무를 포함하며 감사위원회 활동 전반을 포괄한다.

3. 평가는 평가항목에 따라 매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19 조 (규정의 개폐)**

1.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2.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 이사회 규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